

初歩者를 위한 意匠法入門

一 基礎 意匠 <Ⅲ> 一

文 秉 岩

<特許局 審判官>



나. 不動產·動產

有體物 중에서도 不動產 즉 土地 및 家屋 과 같은 定着物은 意匠法上의 物品이 아니다. 그러나 문자는 부동산의 構成部分이긴 하나 그것 自體가 獨立하여 去來의 對象이 되는 動產으로서 物품이라고 한다. 부동산을 의장법상의 物품으로 解釋하지 않는 것은 物品이라는 用語가 동산을 주로 가리키며 가옥·도로·花壇·庭園 등은 똑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 性質의 것이 아니며 (工業性이 없음) 登錄하여도 그다지 그 價値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물 이외에도 TV塔과 같은 것도 토지에 정착된 것으로서 부동산으로 取扱하여 拒絕되나 獨立性을 갖는 예를 들면 建造物의 기둥이나 窓門과 같이 그것을 構成物인 동산으로 매어내면 意匠이 된다. 또 大型機械(大型프레스)·裝置(電氣爐)는 附着시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이 되나 量産이 可能하고 動產의 樣態로서 去來對象이 되는 時期가 있고 부착하기 전에는 運搬이 可能하다고 생각되는 한 動產의 取扱을 받는다.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는 物품은 原則적으로 동산으로서 그 크기는 關係없이 의장의 대상이 되며 船舶이나 航空機도 의장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대형의 선박이 出願된 일은 없으나 보우트와 같은 小型船舶은 우리나라에서도 등록된 일이 있다. 동산이 원칙적으로 의장법의 대상이 되는 物품으로 取扱되나 동산이지만 의장법의 대상이 안되는 것

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液體·氣體·流動體·半流動體

액체·기체·유동체·반유동체 등의 固體가 아닌 것은 의장등록의 대상이 아니며, 의장법상 物품으로서의 價値가 없다. 이는 모두가 定型的인 形狀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액체를 어떤 容器에 담아 一定한 形狀이나 模樣을 나타내는 裝飾品이나 玩具가 있다고 假定한다면 그것은 一定한 形狀이나 모양이 結合된 것으로 封入된 液體를 포함하여 一定形狀과 모양의 全體로서 의장법상의 物품이 될 수 있다. 一定한 형태 속에 액체를 담은 幼兒用 방울玩具가 登錄된 예도 있다.

기체란 煙氣와 같은 것이며 流動體라 하는 것은 물엿과 같은 것을 뜻하고 잼이나 化粧用 크림과 같은 것은 반유동체라고 한다.

② 粉狀物·粒狀物의 集合

예를 들면 시멘트·齒粉·化粧用 粉과 같은 것은 定期的인 形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는 物품이 아니다.

③ 粉狀物·粒狀物의 一單位

분장물·입장물의 一單位와 같은 것은 肉眼으로 判斷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視覺性이 거의 없다는 點에서 의장법상의 의장으로 取扱되지 아니 한다.

日本에서는 銀丹알과 같은 粒狀物이나 쌀알에 모양이나 色彩를 나타낸 것이라면 입장물의 最小單位로서 의장대상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아직까지 日本 特許廳에서는 의장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다음에 물품의 部分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의장법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經濟的으로 한개의 물품으로서 獨立하여 去來의 對象이 되는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물품의 부분이란 접시의 가장자리·주전자의 밑부분과 물을 따르는 주둥이 부분·술가락의 손잡이·그리고 손잡이와 同一材質로 되어있어 分離할 수 없는 飲食物을 뜨는 圓形의 부분, 양말의 뒷굽과 같은 곳을 부분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경제적으로 한개의 물품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取扱되지 아니한다(美國의 의장법에서는 부분에도 의장이 成立한다고 認定하여 양말의 뒷굽을 의장등록 하였으나 지금은 이 規定이 削除되었다).

끝으로 物品 自體의 형태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수건이나 손수건을 접어 토끼·곰·거북·꽃 등의 형태로 하여 販賣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접어서 된 토끼·곰·꽃의 형태는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니다. 그것을 산 사람은 수건이나 손수건으로 使用할 때에는 접은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販賣上 서어비스로서 一時 그와 같은 형태를 取한 것에 不遇한 것이다. 따라서 접은 형태의 수건이나 손수건으로서는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 形狀·模樣·色彩性

가. 形狀

형상이란 外部에서 觀察할 수 있는 물품의 平面的 輪廓(外形)으로서 물품은 必然的으로 特定の 形상을 지니고 있다.

被服地·壁紙·손수건 등은 각각 두께가 있어 理念的으로는 立體이나 이들에 대해서 두께는 의장상의 要點이 되지 아니 하므로 平面的인 것으로 취급한다.

물품은 반드시 형상을 갖는 것이므로 형상이 없는 의장은 생각할 수 없으며 의장법상의 형상이라는 것은 物體가 空間을 차지하는 輪廓을 의미하는 것이다.

英語로는 form·shape·figure 獨語로는 Form, 佛語에서는 form라고 한다.

나. 模樣

모양이란 영어의 pattern 또는 orament가 이에 해당하며 물품에 장식을 위하여 그 형상의 表面에 나타낸 線圖·分色 또는 渲染을 말한다.

선도란 線으로 그린 圖形이고 분색은 色과 色을 線으로 分割하는 것이 아닌 色을 칠하여 간을 나누는 것이고 渲染이란 한쪽을 진하게 하고 다른쪽으로 점점 연하게 물들이는 다시 말해서 진한 色에서 점점 연해지게 그리는 畫法을 말하는 바 모양은 大部分 形狀의 表面에 존재하나 透明體의 경우에는 表面에 나타나기도 하고 內部에 存在하는 수도 있다.

모양은 형상과 달라서 모든 물품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의장도 존재한다. 近來 機能上 불필요한 모양은 배어내야 한다는 思想이 나왔다. 그러나 平面的인 넓은 面積을 가진것, 아름답고 화려한 모양이 要求되는것 例를 들면 피복지나 커튼에는 모양이 不可缺하며 立體的인 것으로서 좁은 表面積에 機能本位的 用途를 갖는 例를 들면 道具類에는 모양이 쓰이는 정도가 적다. 윌리엄 제임스는 「人間的 眼은 空間을 오랫동안 응시하고 있으면 무엇인가 不安定해지고, 어딘가 일정한 곳에 中心을 찾아 眼의 安定을 얻고 싶어 한다. 모양은 이와 같은 不安定感을 解消하고 靚態를 減少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모양의 起源은 오랜 옛날부터 原來는 木材의 나무결과 같이 自然的인것·偶然的인 것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나 차츰 인간의 頭腦에서 나오게 되어 그림을 그리고 짜고 다듬어지고 또 짜고, 물들여지고 하여 人爲的으로 디자인된 것이다.

다. 色彩

색채란 빛이 눈을 자극함으로써 생기는 視感覺으로서 인간의 視覺에 비치는 物體의 屬性의 하나이며 빛에 의하여 인간의 網膜을 刺戟하는 물체의 性質의 하나로서 反射하는 빛의 波長에 의해서 여러가지의 다른 色을 느낀다.

의장법상의 색채는 물품 전체가 單一色으로着色된 것으로서 물품자체의 색채이거나 물품의 外面에 착색한 染料·塗料의 색채이어도 좋다.

인간의 眼으로 分別할 수 있는 色의 數는 數萬을 해야 된다고 하나 색채의 區別은 꽤 까다롭다.

고 색채를 보통 다음의 두가지로 大別한다.

- (1) 無彩色(achromatic color)이란 白·灰·黑의 系統에 속하는 色으로서 이른바 色相을 갖지않는 色을 말한다.
- (2) 有彩色(chromatic color)이란 無彩色 이외의 모든 色으로서 赤·黃·靑·綠·藍 등의 밝은(明色)·어두운(暗色)·맑은(淸色)·탁한(濁色)색의 전부를 포함한다.

色은 色相·明度·彩度 등 3個의 性質로서 이루어져 있어 이를 色의 三屬性이라고 한다.

① 色相(hue)이란 붉은 氣味 노란 기미 파란 기미 등 色의 기미나 色態로서 有體色을 종류별로 구분하는 基本이 되는 것이다. 色態는 빛갈의 態, 氣味는 냄새와 맛·기운·藥의 效能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인 바 色상 즉 色의 기미나 色태는 물이 있다와 물기가 있다 라는 말을 比較하여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無彩色에는 色상이 없다.

② 明度(brightness·luminosity)란 色의 明暗의 狀況 즉 밝기의 정도를 말한다.

밝은 色은 명도가 높고 明色(light color)이라 하며 어두운 色은 명도가 낮고 이를 暗色(dark color)이라고 한다.

③ 彩度(saturation)는 色의 純粹性 鮮明度 즉 色의 맑고 탁한 정도를 말한다. 맑은 色은 채도가 높아 淸色(clear color)이라 하고 탁한 色은 채도가 낮고 濁色(dull color)이라고 한다. 또 同一色相의 淸色 중에서도 가장 채도가 높은 色을 純色(pure colorfull color)이라고 한다. 무채색은 色상도 채도도 없고 명도만이 있다.

이상과 같은 色채 이외에 의장법에서는 色채에 準하는 것으로서 色채에 포함하여 취급하는 金屬色과 透明이 있다.

① 金屬色이란 金色·銀色·크로움(chrome·chromium)색 등을 뜻한다.

② 투명이란 光線을 통과시켜 속까지 환히 트이게 하는 물체의 성질로서 트이는 정도가 100%에 가까운 것을 투명이라 하고 50%정도의 것을 半透明이라 한다.

라. 形狀·模樣·色彩의 境界線

경계선을 borderline 이라고 한다. 英韓辭典을

찾아보면 border는 명사로 가·변두리·가장자리 장식을 뜻하고 動詞로는 接하다·경계하다·가장자리를 장식하다이므로 borderline을 단순히 경계선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를 장식한다는 의미를 포함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굳이 형상·모양·색채의 경계선이라고 번역하는 것 보다 형상·모양·색채의 보오 더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適切한 表現이 아닐까 생각한다.

(1) 形狀과 模樣

형상·모양·색채의 概念은 이상과 같은 說明으로 대체도 明白해졌으나 個個의 具體的인 경우를 當하면 형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모양으로 볼 것인가 또는 色채로 볼 것인가 疑問視되는 경우도 存在한다.

예를 들면 斷面이 波型으로된 板유리의 波型, 木刻品에 있어서 형상에 도드라지게 조각한 돌을새김(陽刻)의 모양, 비닐地の 무늬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모양, 레이스生地の 모양, cut glass 즉 조각이나 細工을 加한 유리그릇 表面의 컷모양 등은 형상으로 볼 것인가 또는 모양으로 볼 것인가의 判斷이 꺾어 어렵다.

이들은 物體가 空間에서 그 물체자체가 차지하는 輪廓이므로 理論的으로는 형상이지만 동시에 表面裝飾的 效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常識的으로는 모양이라고 말할 것이다.

화채그릇을 선택하는 主婦가 흔히 볼 수 있는 화채그릇의 형상보다 表面에 새겨진 모양이 아름다운 것을 골라 表面에 조각된 꽃모양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모양이라는 것은 원래 表面을 장식하기 위한 線圖·分色 또는 渲染으로서 그것이 어느정도 두께나 깊이를 가지고 있어도 表面장식적 效果가 強할 때에는 모양으로 보고자 하는 氣分이 들기 때문이다.

다만 法律的解釋으로는 형상 및 모양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